

제334회 정례회

2014. 9. 16.(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병진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3. 제안이유

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,
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 삭제(안 제12조)

- 개인, 단체 등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경우 시장·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조례의 규제 삭제

나.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을 반영한 용어 순화 등

(안 제2조, 제9조부터 제10조, 제12조부터 제13조, 제15조부터 제16조, 제19조부터 제20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현행 조례 제12조제3항*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요금 징수 조항은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충청북도 내 각 시군에서도 무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
-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, 도민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제12조제3항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사항이며,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개정권고('14.5.27.)가 있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,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* 제12조(자전거 주차요금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.
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.
③ 개인,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·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·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6. 검토의견

가. 「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